보험개혁회의 Ⅷ- ❸

보험산업 미래대비 방안

2025. 3.

관계기관 합동

순 서

I. 추진배경 1

II. 미래대비 과제별 개선방안 2

1. 인구구조 및 기후변화 대응 3

2. 미래 성장동력 발굴 10

3. 선제적 부채관리 활성화 14

IV. 향후계획 18

I. 추진배경

□ 최근 **경기 하방위험**이 커지면서 **'민생 안정'**에 대한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아,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보험의 역할**이 **강조**

* '25년도 경제성장률 전망 : (한은) 1.9%, (정부) 1.8%, (글로벌 IB 8개사 평균) 1.7%

○ **'위험 관리'**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보험산업**이 개별 경제주체의 **안정적 경제생활** 영위에 **기여**할 필요

□ 이에 지난 약 1년여간 **보험개혁회의 논의**를 거쳐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보험산업 전반**의 **개혁과제**(60개+@)를 **발표**

○ 보험상품 설계, 판매, 회계처리, 민원대응 등 **全영역**에 걸쳐 **보험산업 전반**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민생 관련 이슈**에 대응

□ 보험산업이 '**신뢰의 위기**'를 넘어 '**혁신의 기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미래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한 **적기 대응**도 **중요**

○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 **기후 위기**, **빅데이터** 및 **AI** 등 기술혁신에 대응한 **성장동력 발굴** 등이 요구

○ 아울러, **IFRS17**에 따라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면서, **보험부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수단**에 대한 **고민**도 필요

◈ **❶인구구조 및 기후변화 대응, ❷미래 성장동력 발굴, ❸선제적 부채관리 활성화**의 **세 가지 방향성**을 중심으로

➡ 보험산업이 **미래과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더 나아가 이를 **선도**할 수 있도록 **산업 인프라**를 **혁신**

II. 미래대비 과제별 개선방안

< 인구, 기술, 기후 3대 변화>

< 환경변화에 따른 보험산업 성장동력>

➡ 미래에 다가올 3대 변화의 "충격을 완화"하고, "새로운 환경에 대응한 성장동력"을 마련하며, 충격을 "산업혁신"의 기회로 활용

1. 인구구조 및 기후변화 대응

1 보험 자회사 및 부수업무 규제 개선

○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 **요양, 헬스케어, 반려동물 산업** 등 **진출 확대**

2 사망보험금 유동화

○ **사후소득인 보험금**을 **생전 연금소득** 및 **현물·서비스**로 **전환**

3 연금보험 활성화

○ **톤틴·저해지 연금보험 도입**(연금액 38%↑)으로 노후대비 지원 추진

4·5 기후대응 상품 개발

○ **지수형 날씨보험 활성화** 및 **기후변화 대응한 상품** 개선

2. 미래 성장동력 발굴

6·7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소비자 편익 제고

○ **AI**와 **빅데이터**를 **보험에 접목한 혁신서비스** 배양,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신규상품 개발**

8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 **자금조달, 승인절차** 등 **애로사항 해소**

9 벤처(모험)자본 등 장기투자 유도

○ **위험계수 합리화**로 **실물경제지원** 유도

3. 선제적 부채관리 활성화

10 공동재보험 활성화

○ 기존 **공동재보험 유형**의 **장점**을 **혼합한 신거래 유형** 도입

11 보험 계약이전 활성화 기반 조성

○ **계약이전 단위 합리화** 등 제도 개선

1. 인구구조 및 기후변화 대응

1 보험사 자회사 및 부수업무 규제 개선

【 현황 및 필요성 】

□ **인구구조 변화**로 **보험산업**의 **전반적 수요 감소** 및 **상품 니즈 변화** 등이 예상 → **환경변화**에 대응한 **신규서비스 수행 필요**

> ❶ **(자회사)**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회사의 **자회사 업무범위**를 **열거**
> → 금융업, 보험계약 유지·해지 관리, 기업 후생복지 상담·사무처리 대행 등
> ❷ (**부수업무) 포괄주의로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비금융사업**을 **수행중**
> → 건강분석 서비스, 헬스케어 플랫폼 운영, 빅데이터 자문 및 데이터셋 판매 등

【 개선방안 】

□ **(자회사) 보험**과 **시너지 효과**가 큰 업무 중심으로 **업무범위 확대**

○ **(요양산업)** 보험과 연계된 **다양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며, **요양산업 진출 활성화**를 위해 **요양** 관련 **업무범위 확대**

- **(시니어 푸드) 개인별 데이터**에 **기초한 식사 제공** 등 **요양시설**과 **연계**하여 **고도화된 헬스케어 서비스** 등이 운영 가능한 **시니어 푸드 제조·유통업** 허용

> ▸ (보험연계) 건강검진 등 **개인별 데이터**에 기초해 **질환별 영양관리, 요양 상태에 맞춘 단계별 식사** 등 **식이요법** 실시 가능
> ▸ (해외사례) 日 솜포그룹(손보사) 자회사인 솜포케어는 요양시설 시설규모 1위, 매출2위 회사로, **솜포케어푸드**를 통해 **요양시설 맞춤형 식단 공급** 및 **고령층 전용 도시락** 판매 중

- **(공급 활성화) 토지 용도제한** 등으로 **요양 자회사가 불가피하게 요양 이외의 업무**를 하는 경우 **일부*** **수행 가능**하도록 인정

* 다만, 요양 이외 업무 운영비율 최소화 등 요건 부가

- **(위탁운영) 범정부적 규제완화 방향***을 고려, 노인복지시설의 **위탁운영**만 **전문적**으로 하는 자회사도 영위 가능

* 실버타운 사업 경험이 없어도 위탁운영이 가능하도록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 예정

○ **(장기임대)** 보험사 자회사의 **장기임대주택 운영**을 **허용**하여 **임대주택 공급 확대** 지원(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사항)

○ **(헬스케어) 헬스케어 진출 활성화**를 위해 **비의료서비스**로 **인정된 업무**의 경우 영위 가능업무로 추가 허용

- 다양한 **맞춤형 헬스케어 상품 개발**할 수 있도록 **非의료기관 헬스케어 서비스 범위 확대** 지속 협의(복지부)

* 예) 디지털 헬스케어 상품: 보험사에서 서비스로 제공하는 디지털 의료기기를 통해 수집한 고객 건강정보를 건강지표로 계산하여 소비자에게 제공

□ **(부수업무) 포괄주의**로 운영하는 **현 체계**에서 **확대 가능**하며, **'보험업 부수성'** 요건을 **적극적**으로 **해석**

○ **(반려동물)** 보험회사가 **다양한 펫보험 연관 사업***을 **플랫폼**에서 **one-stop**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부수업무 허용**

* AI건강진단-펫보험가입-병원예약-보험금청구 등 보험 단계별 연계
펫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 용품 판매, 펫 등록 지원 등 관련사업 연계

<반려동물 관련 one-stop 서비스 제공 플랫폼 예시>

☞ (조치 필요사항) 보험업법 시행령 §59 개정

2 사망보험금 유동화

【 현황 및 필요성 】

□ **소득이 낮은 고령**의 **피보험자**의 경우, **노후 대비**를 위해 **사망보험금**을 **노후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

○ **다수 고령층**의 **주요 자산**인 **종신보험을 활용**하여 **저소득 고령층 지원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

- 기존 보험계약대출의 경우 **상품구조*상 과거 고금리 계약** 등에 대해서는 **소비자 부담**을 해소하지 못한다는 한계

* 보험계약대출 금리 = 기본금리(보험상품의 예정이율) + 가산금리

➡ 사후자산인 **사망보험금**을 **유동화**하여 **노후자산**으로 **전환**

【 사망보험금 유동화방안 】

□ **(적용대상)** ❶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담보**, ❷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❸**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계약

○ 연금전환 특약 등이 부가되어 있지 않은 **기존 종신보험 계약**에 **제도성 특약**을 **일괄 부가***

* 일차적으로 변액종신보험, 금리연동형종신보험, 단기납종신보험, 초고액 사망보험금 계약(9억원 이상)을 제외하고 부가할 예정

□ **(신청자격)** 신청시점에 **보험계약대출**이 없는 **만 65세 이상 피보험자**

□ **(상품안)** **사망보험금**을 **유동화**하여 ❶**연금형**, ❷**서비스형**으로 **활용**하는 방안 추진(유형간 결합 가능)

❶ **(연금형)** 유동화를 통해 **최소 본인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상회하는 금액**을 연금으로 **매월 수령**

<연령별·유동화 비율별 수령가능금액 예시(단위:만원)>

유동화 / 개시	70%			80%			90%		
	총수령	월수령	비율	총수령	월수령	비율	총수령	월수령	비율
65세	4,741	19.7	**107%**	5,419	22.6	**122%**	6,096	25.4	**137%**
70세	5,206	21.7	**117%**	5,950	24.8	**134%**	6,694	27.9	**151%**
75세	5,621	23.4	**127%**	6,424	26.8	**145%**	7,228	30.1	**163%**
80세	6,121	24.8	**135%**	6,825	28.4	**154%**	7,678	31.9	**173%**

▸ 40세 가입하여 20년동안 **총 4,400만원**(월 18.3만원) 보험료 납입
▸ 사망보험금 1억원, 6.0% 예정이율, **매월 연금형태**로 **20년 수령** 가정
▸ 유동화 금액을 제외한 **잔여 사망보험금 존재**(70% 유동화시 3,000만원 보험금 잔존)

- 매년 보험계약의 **책임준비금***의 **일정부분**을 **자동 감액**하여 지급

* 매년 책임준비금의 일정비율을 지급하므로, 책임준비금이 많이 적립된 고연령일수록 보다 많은 금액 수령 가능

- **추가적인 사업비 수취**나 **대출이자 비용 없음**

- **수령기간**과 **수령비율***은 **본인상황**에 따라 선택 가능

* 소비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상회하는 유동화 비율만 보험사 제시 가능

❷ **(서비스형) 사망보험금**을 **유동화**하여 **현물** 및 **서비스 형태**로 지급

- 서비스·현물로 지급시 보험사는 **원가 이하**로 **소비자**에게 **제공**

※ 사망보험금 유동화 서비스형 예시
❶ **(통합 서비스형)** 고객이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여 **자유롭게 사용**
❷ **(요양시설 특화형)** 보험사가 직접 **유동화 금액**을 **제휴된 요양시설**에 **지급**하여 **입소 비용**의 **일부로 충당**
❸ **(헬스케어 특화형) 주요 질병**(암, 뇌출혈, 심근경색 등)에 대한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
* 전담 간호사를 배정하여 투약상담, 식이요법 상담, 진료 및 입원 수속 대행 등

□ **(소비자 보호)** **보험수익자 사전동의**, 유동화시 **보험금 수령액 상세설명** 등 **가입전-청약-가입 후 단계**에서 **소비자 보호장치*** 마련

* ❶ (가입전) 고객에게 직접 연락하는 등의 푸쉬마케팅 금지, 전문 상담채널 운영
❷ (청약) 보험계약 유지 및 유동화시 총수령액을 비교·설명 → 신청의사 자필 서명
❸ (가입후) 유동화 철회권, 취소권 및 부당한 사유 유동화시 부활청구권 보장

☞ (조치 필요사항) 보험사 상품 세부 서식 및 전산 마련 → **하반기 출시 목표**

3 연금보험 활성화

【 현황 및 필요성 】

□ **고령화 진전**에 따라 **노후소득 보장**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으나 **국민연금 월평균 수급액**은 **부족***한 상황

* 노후적정 생활비(월 177만원) 대비 국민연금 월평균 수급액은 58만원('22년)

○ **사적 연금시장**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크게 증가**하였으나, **선진국 대비** 시장 규모는 **여전히 낮은 수준***

* GDP 대비 사적연금 적립액 비율 : (미국) 134.4%, (영국) 104.5%, (한국) 28.5%

➡ **톤틴·저해지 연금보험**을 **도입**하여 **연금보험 활성화** 및 **국민**의 **노후대비** 지원 추진

【 톤틴·저해지 연금보험 도입방안 】

□ **(상품구조)** 연금 개시 전 **사망**하거나 **해지**한 경우, 보험료 적립액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하는 대신 **연금액을 증액**하도록 설계

○ **(한국형 톤틴)** 연금개시 전 **사망시** 현행 상품보단 **지급액**을 **적게** 하나, **소비자 수용성** 등을 감안 **기납입보험료 이상 지급***

* 사망시 지급액 = (現) Max[기납입보험료, 적립액 100%]
→ (改) Max[기납입보험료, 적립액 70%]

○ **(저해지) 종신연금 중도해지 환급금**을 일반상품보다 **적게 지급***

* 감독규정(§7-66④)은 종신연금만 저해지 허용 → 우선 종신연금 저해지 상품 개발 후 운영 상황 등을 보아가며 확정기간형 저해지 허용 여부 추가 검토

☞ **(기대효과)** 톤틴·저해지 연금은 일반상품 대비 **연금액 38% 상승효과 기대** (톤틴 효과 2% + 저해지 효과 36%)

□ **(소비자보호)** 연금보험 지급 前 **사망·해지시 지급금이 감소**하므로, **가입자에 대한 충분한 설명장치*** **마련** 필요

* 강화된 계약자확인서, 보험사 자체 상품판매자격제도 운영, 해피콜 실시 등

☞ (조치 필요사항) 보험사 상품 세부 서식 및 전산 마련 → '26년 초 **출시 목표**

4 지수형 날씨보험 활성화

【 현황 및 필요성 】

□ 기상이변 등 **기후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으나, **전통적 보험상품** 및 **체계**로는 **새로운 위험 대응** 및 **소비자 수요 충족**에 **한계**

○ 날씨 피해가 발생하여도 **손해사정** 후 **실제 보상**까지 **상당 기간 소요**되고, 날씨와 발생 손해간 **상관관계 입증**이 **어려움**

□ **지수형 날씨보험*** 상품개발에 **별도 규제**는 **없으나, 상품개발 난이도**가 다른 상품대비 높아 보험회사는 **상품 개발**에 **소극적**

* 사전에 정한 날씨지수(강수량, 강설량 등)가 정상 수준을 벗어나는 경우, 날씨지수 수준에 비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

【 개선방안 】

□ **지자체·발전소** 등에 대해 **지수형 날씨보험** 개발시 **위험통계가 부족**한 경우 **재보험자 협의요율***도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

* 손해보험회사가 재보험사로부터 제공받아 사용하는 요율(비통계요율)

○ 보험 실수요자에 한해 **위험을 보장**하도록 **피보험이익**을 **명확히** 하고(계약인수시 날씨 피해 가능성 확인 등), **날씨지수 정교화, Tail risk 관리** 등을 포함하여 **상품 개발 원칙** 마련

○ 다만, 협의요율 사용 후 **충분한 통계**를 집적하여 일정 기간 이후에는 **통계요율**로 **전환**하도록 설계

< 지수형 보험 상품개발 원칙 >

❶ (인수기준) 손해보험 원칙을 훼손하지 않도록 객관적·신뢰도 높은 데이터를 통해 **피보험이익의 존재가 명확하게 확인**되어야 함

❷ (지수개발) **보험사고** 발생에 따른 **재무적 손실의 연관성**이 높아야 하고, **경험통계** 축적을 위한 **내부 업무 프로세스**를 구축

❸ (위험관리) 원수 보험회사는 **상품위원회** 등 의사결정시 **거대 보험사고 발생 등 컨틴전시 상황**을 고려하여 보험계약자 보호방안 등을 철저히 점검

☞ **(기대효과)** 다양한 지수형 보험 출시를 지원하여 기후 리스크로부터 계약자를 보호

- **지자체 복구비용** : 호우·태풍·대설 등으로 인한 지자체의 피해복구 비용 등 보장
- **발전소** : 일사량 부족 등에 따른 태양광 발전소 발전량(매출) 감소 보상
- **전통시장 소상공인** : 폭우·폭염·한파 등에 따른 전통시장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

☞ (조치 필요사항) 보험회사별 상품 개발 후 금감원 신고수리

5 기후변화에 대응한 상품 개선

【 현황 및 필요성 】

□ **관계부처 예산 지원** 등을 통해 **자연재해 보장상품** 운영 중이나 **기후 리스크**가 **확대**되는 점을 감안 **신규보험수요**에 대응할 필요

【 개선방안 】

□ **(기존상품 개선)** 보험개발원, 관계부처 등과 함께 **기후변화 위기 대응** 관련 **보험상품*** **개선방안** 검토

* 예) 농작물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풍수해·지진 재해보험 등

○ 개발원을 중심으로 **자연재해 위험**을 **보장**하는 **현행 상품**의 **적절성 분석** 및 **개선과제 도출** 추진(관계부처 협의 필요)

□ **(신규담보 개발)** **보세창고*** **보험가입 범위**를 확대하여 **자연재해** 등에 따른 **화주·창고업자**의 **손실**을 보장

* 수입품이 세관을 통해 통관되기 전에 임시로 보관하는 창고 → 항구 등에 위치하여 태풍·폭풍·해일 등 자연재해에 취약하고, 관리감독 부재 시 화재·폭발·도난 등 위험 증가

❶ **화주** 보험목적물의 **화재**로 인한 손해만 보장하고 있었으나, **태풍·폭풍·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까지 **보장 확대**

❷ **창고업자**에 대해 태풍·폭풍·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동산 손해**를 **신규**로 **보장**

❸ 창고가 **노후**되었거나 **과거 보상이력**이 있어 창고업자의 **배상책임 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 **협회 공동인수**로 **배상책임 보장***

* (재산손해) 창고업자 손해배상 비용, (법적책임) 소송 및 변호사 비용 등
※ 배상책임보험은 보험사에서 인수를 거절한 경우에 한하여 협회 공동인수 활용

☞ **(기대효과) 전국 500여개 보세창고** 관련 화주·창고업자의 **위험보장 확대**

☞ (조치 필요사항) 손해보험협회 공동인수 상호협정 개정

2. 미래 성장동력 발굴

6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소비자 편익 제고

【 현황 및 필요성 】

□ 보험회사가 **AI, 빅데이터** 등 **인슈어테크**(InsurTech)를 활용하여 **소비자 편익**을 제고할 수 있도록 **혁신서비스 지원** 필요

【 개선방안 】

□ **(빅데이터 분석 강화)** ❶**보험개발원,** ❷**신용정보원** 등에 집중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빅데이터 기반 보험권 공동 인프라** 강화

❶ 보험소비자 중심 **데이터마트**(Data Mart)를 구축하여, **소비자**의 **생애주기별 보험 세부정보**를 **심층 분석**(개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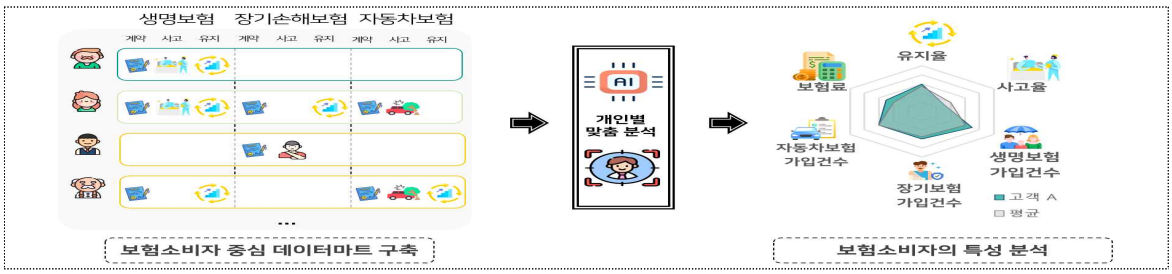

❷ 실손보험 등 제3보험에 대한 **지급보험금의 급격한 변동** 등을 **보험금 지급 요인별**로 **종합 모니터링**(신정원)

□ **(AI기반 인수심사 모델)** 보험회사 **인수심사 자동화** 및 **시스템 정교화**를 위한 **AI·머신러닝 기술 기반 모델** 구축

* 합리적인 인수심사 기준에 부합하는 참조용 지수·통계 등 산출

※ AI 기반 설계사 추천 서비스 개발 예정(보험연수원/예산확보 절차 등 필요)

□ **(망분리 규제완화)** 보험업무에 **AI** 등 **디지털 연계 확대**를 위한 망분리 규제 **혁신금융서비스 적극 지원 → 성과가 입증된 사업**은 **판매채널** 등에서도 **조속한 제도개선** 검토

☞ (조치 필요사항) 보험개발원, 신용정보원에 '보험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및 'AI 기반 인수심사 지원 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

7 자율주행차 상용화 대비 특약 등 도입 검토

【 현황 및 필요성 】

□ 우리나라는 **'27년까지 완전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마련 등 **관련 법·제도 기반 강화 중**

○ 자율주행차는 **해킹, 시스템 결함**에 따른 사고 등 **새로운 위험**이 존재하는 만큼,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전용 보험상품 개발** 필요

【 개선방안 】

□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 운전자가 **사고위험 등**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전용 보험상품 개발 추진**

❶ **(신규위험 보장) 피보험자 책임**과 **무관**하게 **자율주행시스템 결함** 등을 **원인**으로 발생한 사고를 **보상**하는 **특약 개발***

* 사고발생시 보험사가 우선 보상한 후, 시스템 결함 등 확인시 제조사에 구상

❷ **(보험료 할인)** 직접 운전 대비 **자율주행 사고위험**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위험도** 등을 **반영**하여 **보험료 할인**

* (사고율, '23년) 자율주행차(시험·연구용) : 7.0%, 일반자동차(개인용) : 14.6%

❸ **(서비스 강화) 소프트웨어** 및 **센서 오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회사와 **연계**한 전문 정비업체를 통해 **정기 점검서비스 제공**

☞ (조치 필요사항)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기 등을 감안하여 전용 보험상품 개발 준비

8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 현황 및 필요성 】

□ 국내 보험회사는 **단순 보험영업 점포 운영**이 아닌 **해외 보험사 지분투자, 자회사**(非보험 금융회사 등) **인수** 등을 통해서도 **진출 중**

* 예: 한화생명 인도네시아 은행 자회사 인수, DB손보 베트남 손보사 지분투자

○ **해외 자회사 자금조달, 소유 승인 절차** 및 **운영·진출과정**의 **업계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할 필요

【 개선방안 】

1 해외 자회사 **채무보증** 관련 지급여력비율 요건을 **타 자본규제**(**예: 보험종목 추가 허가**) **요건 수준으로 완화**(예: 現200%→改150%)

2 자회사 소유 승인시 **인수 대상회사** 건전성 관련 **해외 감독당국의 확인서류**(先승인)를 요구하던 **관행을 합리화**

3 신규 해외 진출의 경우, **해외 금융종속회사**의 **요구자본 산출**시 **일정기간*** **K-ICS 간편법 허용** 등을 통해 **실무부담 경감**

* 시스템 구축 및 안정화기간 등을 고려하여, 자회사 인수 후 1년까지는 간편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

※ <참고> 해외종속회사 요구자본 산출방법

· 해외종속회사의 경우 기본법 적용이 원칙이나, 규모상 비중요성 기준을 충족하고 기본법-간편법 간 요구자본 오차가 중대하지 않은 경우 간편법 적용 가능

· **(기본법)** 계정별 요구자본 별도 산출·합산 ↔ **(간편법)** 총자산의 8%로 산출

☞ (조치 필요사항) 보험업법 시행령(§57의2) 및 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9 사회서비스 공급기능 활성화를 위한 장기투자 유도방안

【 현황 및 필요성 】

□ **벤처기업, 부동산 상장리츠** 등 **국가 실물경제 지원**을 통하여 금융의 **사회서비스 공급기능 활성화 기대**

○ 특히 국민의 생명, 질병 등 **장기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업권의 **장기 자산투자를 유도**할 필요

□ 다만, **보험업권 지급여력규제**(K-ICS)상 **벤처, 부동산 상장리츠** 등 투자시 **부과**되는 **요구자본***이 **투자 저해요인**으로 지적

* 벤처펀드 편입주식은 49%(비상장주식) 충격수준을 적용하며, 상장리츠는 편입 자산분해 미수행시 49%(비상장주식)~75%(부동산형 레버리지 펀드) 충격수준 적용

【 개선방안 】

□ 적격요건 충족 **벤처***, **부동산 상장리츠**** 등 투자시 적용되는 **충격수준**을 **상장주식 수준**(35%)**으로 합리화 → 실물경제 지원 유도**

* [벤처 투자] 근거법에 따른 투자시 정부의 벤처기업 인증, 운영실태 모니터링 등이 실시되는 점을 고려하여 비상장주식(49%) 대비 위험계수 완화

** [부동산 상장리츠] 주식시장에 시가금액이 존재하고 회계상 주식으로 분류되는 점 등을 감안

○ 중·장기적으로는 **내부모형*** **도입**을 **적극 지원**하여 **보험회사**의 **합리적**이고 **건전한 의사결정 토대 마련**

* 보험회사 **자체통계에 기초하여 산출한 위험계수**를 요구자본 산출시 인정

☞ (조치 필요사항)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 22」개정 등

3. 선제적 부채관리 활성화

⑩ 공동재보험 활성화

【 현황 및 필요성 】

□ **IFRS17에 대비**하여 **부채 구조조정·ALM 수단**으로서 **'20년 도입**된 **공동재보험의 실적**이 **저조**(5년 간 **거래건수 9건**에 불과)

○ **既도입된 거래유형**(❶자산이전형 및 ❷약정식 자산유보형)의 **구조적 한계**가 활성화 제약 요인※으로 지적

※ 공동재보험 거래유형별 구조적 한계

❶ **(자산이전형)** 원수사의 **자산**을 **재보험사**가 **이전**받아 운용
→ **일시**에 자산을 이전하면서 **신용위험 및 유동성 부담** 발생

❷ **(약정식 자산유보형)** 원수사는 **자산**을 **유보하고 일정 이자**를 재보험사에 **지급**
→ 상품구조가 **복잡**하고, **재보험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음**

○ 거래 규모가 큰 **공동재보험** 특성상 **국내 수재여력에 한계**

- **공급처 확대**를 위해서는 역외 재보험사 거래가 필요하나, 계약과정에 **국내진출 지점이 참여할 수 없어 불편*** 가중

* 현행 비대면·중개 거래로는 **원활한 협의가 어렵다는 업계 애로사항 건의**

【 개선방안 】

1 두 유형의 **장점**을 **융합**한 **'일임식 자산유보형' 거래를 도입**

○ 원수사에 자산을 유보하여 **신용·유동성위험**을 **제거**하고, **자산운용위험은 재보험사가 부담**하여 약정식의 단점을 해소

2 공동재보험 거래과정에서 **국내지점의 설명지원***을 **허용**

* 외국보험사는 **중개사**를 **통하여** 공동재보험을 **수재**하되, 거래과정에서 **국내지점**이 **상품설명 지원** 등의 **역할 수행**(단, 국내지점은 부수업무 신고 필요)

☞ (조치 필요사항) 공동재보험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개정 및 부수업무 신고

참고1 공동재보험 개요 및 거래유형 설명자료

1. 공동재보험(Co-insurance) 개요

□ 위험보험료 뿐만 아니라 저축보험료 등 **모든 보험료**(영업보험료)를 **재보험사에 출재**하는 방식

○ **보험위험의 전가**만을 목적으로 하던 **전통적 재보험***과 달리 **금리·해지위험 등의 전가가 가능**(☞ K-ICS 관리·ALM에 효과적)

* 주로 위험보험료만 출재하는 1년 갱신형으로 거래(YRT, Yearly Renewable Term)

< 전통적 재보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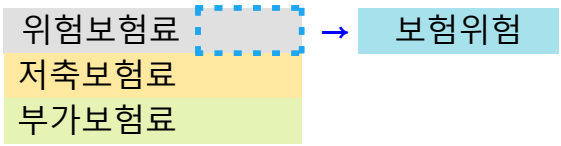

< 공동재보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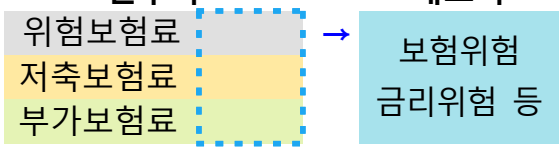

2. 주요 거래유형 비교

□ **보험부채**(책임준비금)가 **재보험사로 이전**되면서, 이에 **상응하는 자산도 이전되는지 여부**에 따라 **유형 구분**

< 공동재보험 유형별 거래 구조 도해 >

구분		거래 구조
자산 이전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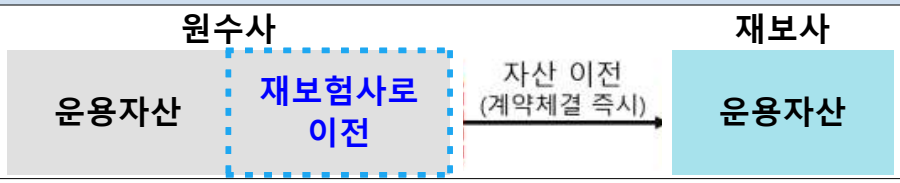
자산 유보형	약정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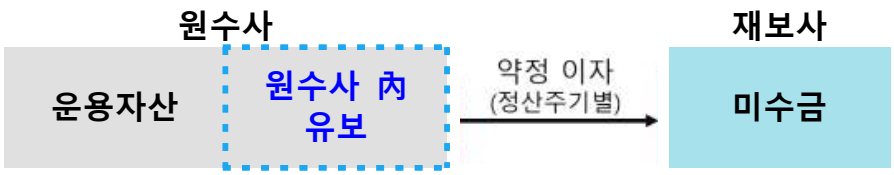
	일임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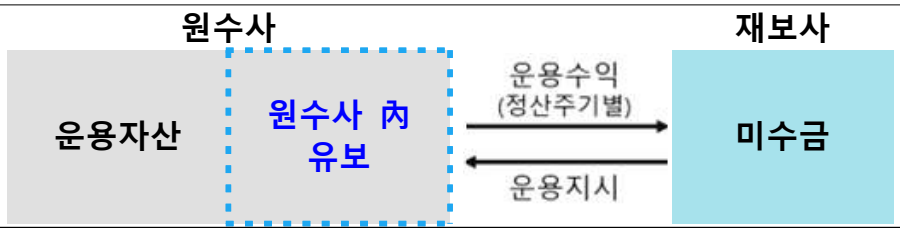

⑪ 보험계약이전 활성화 기반 조성

【 현황 및 필요성 】

□ **보험회사**는 **부채관리**를 위해 보험계약 **부채 및 자산**을 **다른 보험회사**에 **이전**하는 **'계약이전'**을 고려할 수 있으나, **활용도**는 **낮음**

○ 「**보험업법**」에 따라 **'임의적 계약이전'**이 가능하나, **요건이 엄격***하여 **그간 적용사례**는 **1건**에 불과('03년 하나생명)

* (대상) 책임준비금 산출기초가 동일한 계약의 전부를 이전
(제한) 보험계약자의 1/10, 보험금 총액의 1/10 초과하여 이의제기시 불가

□ 특히 보험업법상 **책임준비금 산출 기초가 같은 계약 전부**를 이전해야 하는 **'포괄이전' 규제**로 인해 계약이전 활성화가 제약

○ **위험률·예정이율**이 동일한 계약 **전부**를 이전해야 해, **판매채널별**로 **사업비**가 달라도 **이전 불가** → **채널 특화** 등 **불가**

【 개선방안 】

1 **보험회사 부채관리 활성화**를 위해 **기존 위험률·예정이율 외**에 **사업비**가 다른 경우에도 **계약이전 허용**

○ **동일시기** 판매한 **특정상품** 계약이 **판매채널**에 따라 **사업비가 다른 경우, 계약이전** 허용 → 채널 특화 등 **사업구조 개편**

* 필요시 계약이전 단위를 '해약환급금 산출 기초가 같은 계약'으로 법 개정

2 보험사업자의 **경영·재무상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지 않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승인**(보험업 감독규정 개정)

3 **향후 계약이전 시장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Run-off 전문보험회사*」** 도입 방안을 **추가 검토**(예: 인력·물적요건 완화 등)

* 신규 보험모집 없이 다른 보험회사로부터 기존 보험계약을 이전받아 자산운용 및 계약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보험회사

☞ (조치 필요사항) 보험업법 감독규정(제7-40조) 개정, 필요시 법개정

참고2 계약이전제도 제도 및 개선방안 설명자료

□ **(개요)** 보험회사는 **금융위 인가**를 받아 **책임준비금 산출 기초**가 **같은** 보험계약 **전부**를 다른 보험회사에 **이전 가능**(보험업법 제140조)

※ 이와 별개로, 금산법에 따라 금융위는 보험회사 재무상태가 적기시정조치 기준에 미달하거나 미달할 것이 명백한 경우 보험계약의 이전 등을 명령할 수 있음(강제적 계약이전)

□ **(문제점) 사업구조 개편** 등의 목적으로 **계약이전**을 한 사례는 **1건**에 그치는 등 **자율적 부채관리**를 위한 제도 활용이 **미흡**

⇒ **보험회사**가 **비핵심 사업 정리, 자본 재배분** 등을 위해 **필요시 계약이전**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반여건 조성**

□ **(개선사항)** 기존의 **위험률, 예정이율 외**에 **판매채널**에 따라 **사업비**가 다른 경우도 계약이전 **허용** ⇒ 보험회사 **부채관리 및 사업구조 개편 지원**(필요시 법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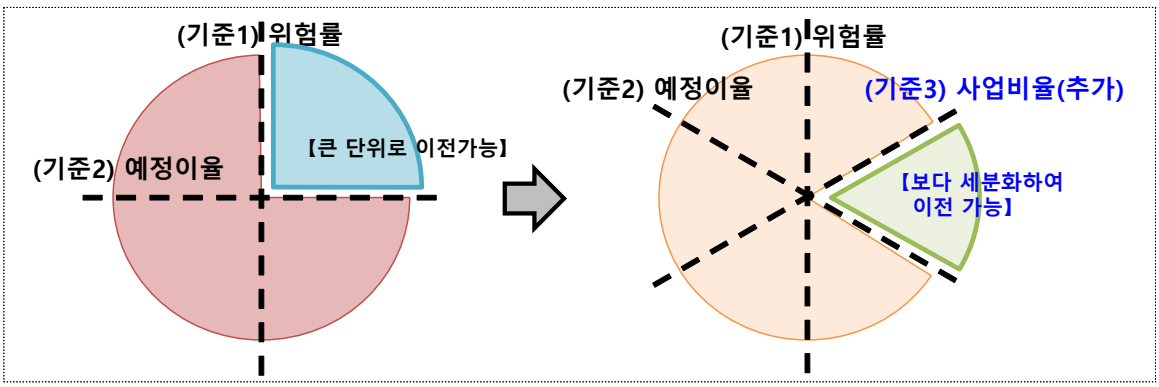

○ **경영·재무상태** 등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로 **심사요건 완화** 병행

□ **(향후 검토사항)** 계약이전 **시장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런오프 전문 보험회사」** 도입 방안 등 **검토**

○ **상품 개발, 보험계약 체결** 등을 **수행하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이와 관련된 **인력·물적시설 구비의무** 등 **차별화** 검토 가능

* 단, 법상 필수 인력(준법감시인 등), 계약유지 업무 관련 인력·물적시설 등은 구비 필요

III. 향후계획

1 **(상품출시)** 미래대비 과제 중 **신규상품 출시과제**는 상품출시 준비 등을 거쳐 **조속히 출시**

❶ 사망보험금 유동화 연금형 및 서비스형 모두 **전산준비, 서비스 제휴** 등을 **완료한 보험사**부터 **하반기 순차적 출시** 목표

❷ **톤틴 연금** 역시 상품 준비 등을 거쳐 **'26년 초 출시 추진**

2 **(법령개정 과제)** 7차 보험개혁 이후 **법령개정** 등에 **집중할 계획**으로, **법령개정 직후 개선방안**을 **이행**할 수 있도록 준비

○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25.3분기 목표) →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25.4분기 목표) 추진

3 **(기타 과제)** **법령개정 없이 수행**할 수 있는 과제들은 **최대한 속도감 있게 이행**

< 과제별 조치 필요사항 및 시행시기 >

과제명	조치 필요사항	시행시기
자회사·부수업무 규제 개선(일부)	해석 명확화	즉시 시행 가능
지수형 날씨보험 활성화	상품개발	즉시 시행 가능
보세창고 보장범위 확대	상호협정 개정	'25.2Q 목표
디지털 인프라 구축	기관별 인프라 구축	'26년 초 시스템 개시
공동재보험 활성화방안	가이드라인 개정	'25.2Q 목표

4 **(중장기 과제)** **보험산업 미래대비 과제**는 수시로 실무협의체를 운영하며 **추가 과제**를 **발굴할 예정**

❶ **보험산업 신탁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방안** 연구

❷ **보험산업 본질적 업무**를 세분화하여 **위탁 가능범위**를 **확대 조정**하는 등 **신규 Player 진입 촉진**

❸ 계약이전 시장수요 등을 고려 **Run-off 전문 보험회사 도입** 검토

❹ **연금보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검토